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회사·인물·금액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운송 대행 계약서

2025년판 · 대현테크(가명) 양식 · 계약일 2025년 3월 20일

대현테크 주식회사(가명, 이하 «갑»)와 한결물류 주식회사(가명, 이하 «을»)는 갑의 화물 운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평택공장 및 협력업체 간 부품 운송 업무를 을에게 맡기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쪽도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 (운송 업무)
을은 갑이 지정한 일정과 경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 결과를 매월 5일까지 갑에게 보고한다.

제4조 (운임과 지급)
① 운임은 별지 단가표에 따른다.
②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임을 지급한다.

제5조 (납기 지연)
을의 사유로 납기가 늦어지면 을은 늦어진 날 하루마다 해당 운임의 0.5%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화물 손해 배상)
운송 중 화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을은 갑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한다.

제7조 (보험)
을은 계약 기간 동안 보상 한도 1억 원 이상의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갑에게 낸다.

제8조 (재위탁)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운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다.

제9조 (비밀 유지)
을은 업무 중 알게 된 갑의 정보를 계약 기간 및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0조 (계약 해지)
한쪽이 계약을 어기고 서면으로 고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갑: 대현테크 주식회사 (가명) 대표이사 (서명 생략)	을: 한결물류 주식회사 (가명) 대표이사 (서명 생략)